

# 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1794년 6월 25일) 기록보존에 관한 법령연구

-의회 문서보관소에서 국립문서보관소로의 진화과정에 대한 연구-

조 청 현\*

1. 서론
  2. 의회 문서보관소로서의 출발
  3. 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의 법령을 통한 국립문서보관소의 형성
    - 1) 문서보관소의 정의
    - 2) 모든 기록문서의 중앙 집중화 천명과 좌절 - 각 문서보관소 행정의 중앙집중
    - 3) 역사적인 문서의 국립중앙도서관으로의 이전
    - 4) 역사 항목이 제외된 이유-사유재산과 국유재산의 보호 그리고 법률의 보존
    - 5) 문서의 수집과 분류
    - 6) 문서의 공개
  4. 결론
- <<부록>> 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의 법령 전문 - 국가의 표상을 위하여 수립된 국립문서보관소 조직법-

\* 한국의국어대학교 사학과 대우교수 (new0history@hufs.ac.kr).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1794년 6월 25일)의 법령을 통해 초기 문서보관소의 체계와 문서분류 방법 및 그 조직만이 아니라 역사적 자료의 관리주체에 관한 초기의 논쟁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 법안에는 오늘날의 문서 관리자들 혹은 역사가에게 경탄을 자아낼만한 두 가지 주제가 존재한다. 첫째로, 이 법령은 역사에 관련된 사료 문서들과 그것에 속하지 않는 다른 문서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이다. 둘째로 역사적인 문서를 소장하는 장소와 관리 주체는 국립문서보관소가 아니라 국립도서관이라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프랑스 혁명 이후 기록 보존에 관한 국가의 책임,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권 보장 등의 전통이 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의 법령을 통해 확립되었다. 그리고 동법을 통해 입법부와 문서보관소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통일적인 관리 체계가 확립되었으며, 기록보존 장소는 지방분권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이 확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의 법령, 프랑스혁명의회문서보관소, 프랑스국립문서보관소, 기록분류, 문서의 공개

### 1. 서론

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의 법령은 기록관리학의 역사만이 아니라 프랑스 역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법령 중의 하나이다. 그 이유는 문서보관소가 소장한 전체 문서의 자유로운 이용과 공

개 원칙을 처음으로 제기한 법령이라는 점만이 아니라 총 48개 조항을 통해 프랑스 문서보관소의 문서분류와 문서보관소의 설치 및 그 행정에 있어서 기초를 이루는 법령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령은 약 2세기가 지난 1979년 1월 3일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록관리학의 토대를 쌓은 법령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1)</sup>

사실상 이 법령은 프랑스 혁명의 시작 이래로 생산된 문서들의 보존 필요성과 분류를 조직하고 분류법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입법화 되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중심 조항은 의회나 행정부에서 생산된 문서들의 보존 유무를 판단하고, 그 문서 중에서 국립문서보관소에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료와 역사 기술에 흥미 있는 자료를 국립도서관에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국립문서보관소에 보존할 것인가를 선별하는 조항이 있다.<sup>2)</sup>

이 법안에는 오늘날의 문서 관리자들 혹은 역사가에게 경탄을 자아낸만한 두 가지 주제가 존재한다. 첫째로, 이 법령은 역사에 관련된 자료 문서들과 그것에 속하지 않는 다른 문서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이다. 둘째로, 역사적인 문서를 소장하는 장소와 관리 주체는 국립문서보관소가 아니라 국립도서관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혁명력 2년 메시도르 2년(1794년 6월 25일)의 법령을 통해 초기 문서보관소의 체계와 조직만이 아니라 문서분류와 그 체계 및 문서분류 주체를 체계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

1) Michel Duchein, “Requiem pour les trois défuntés”, *La Gazette des archives*, no 104(1979), p. 13.

2) Pierre Santoni, “Archives et violence : à propos de la loi du 7 messidor an II”, *La Gazette des archives*, nos 146-147 (1990), p. 199 ; Robert-Henri Beautier, “La phase cruciale de l'histoire des archives : la constitution des dépôts d'archives et la naissance de l'archivistique, XVIIe -début du XIXe siècle”, *Archivum*, vol. 18 (1968), p. 148.

## 2. 의회 문서보관소로서의 출발

프랑스국립문서보관소는 프랑스 혁명기에 설립되었다.<sup>3)</sup> 혁명 초기인 1789년 7월 29일에 국회는 문서보존소의 설치를 결정했던 것이다.<sup>4)</sup> 그 이전의 문서보존소가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들은 근대적인 문서보존소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달랐다. 국립문서보존소라는 용어는 1790년 9월 12일 법령에서 처음 분명히 언급된다.<sup>5)</sup>

프랑스 혁명기간에 국립문서보관소의 설립에는 사실상 구체제시기를 상징하는 문서보존소<sup>6)</sup>들이 혁명기간 동안 파괴와 약탈을 당하고<sup>7)</sup> 혁명 기간 동안 생산된 문서들이 인멸되는 상황에서 기록보존의 필요성에서 나타난 기관이었다. 즉, 국가가 과거 기록유산을 보호할 필요성이 이 시기에 제기되었던 것이다. 프랑스 혁명정부는 과거 왕정과 교회, 귀족이 독점하고 보존하던 정부의 기록을 비롯하여, 귀족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일조했던 각종의 봉건적 특권을 보장하는 기록을

---

3) Bruno Galland, "L'archivistique française a l'épreuve du temps", *Archives*, V.34, N. 1 ET 2, 2002-2003, pp. 119-137, p. 120.

4) 문서보관소라는 용어가 쓰이긴 했으나, 이곳에 소장된 문서들은 1788년 이후 삼부회로부터 시작하여 입법부에서 생산된 문서만을 보관한다. 이곳에 수집 보존될 자료는 사실상 혁명정부에서 생산한 법률을 수집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5) 국립문서보관소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는 것은 이 때이지만 사실상 이 곳에 보존되는 자료는 의회기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문서보관소라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Henri-Léonard Brdier, *Les archives de la France ; histoire des archives, des ministères, des départements, des communes, des hôpitaux, des greffs, des notaires etc., contenant l'inventaire d'une partie de ces dépôts*, Paris, Dumoulin, 1885, pp. 2-3.

6) 혁명 이전의 문서보관소는 국왕 내지 영주가 자신의 통치 행위를 정당화하든가 자신의 특권을 합리화하는 증거문서들을 확보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7) 사실상 혁명의 초기 과정에서 과거의 많은 역사적 기록물들이 구체제 시기의 유물로 간주되어 소실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Léon de Laborde, *Les archives de la France, leurs vicissitudes pendant la Révolution, leur régénération sous l'Empire*, Paris, Vve Renouard, 1867을 참고하시오.

시민에게 공개하며, 앞으로의 정부활동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에 대해서도 시민이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했다.

프랑스 혁명은 문서보관소의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전국적인 차원의 문서보관소 행정의 틀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sup>8)</sup> 국회기록보관소를 목적으로 1789년 혁명기간에 처음으로 설립된 국립문서보관소는 1789년 7월 29일 국회에서 문서보관과 열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을 설치할 필요성을 역설하는 가운데 태어났다.<sup>9)</sup> 즉 1789년 7월 29일 국회는 국회의 운영과 관련된 문서, 국회가 채택한 법률과 관련된 모든 원본기록을 수집, 정리, 보관할 문서보관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의회문서보관소의 장소를 물색하도록 했던 것이다. 더욱이 이 법령에 의하면 의회기록만이 아니라, 행정·재정·사법·교회·수도원·길드 등 모든 분야의 고문서들을 한 곳에 수집하고 더 나아가서 새로 만들어지는 이와 관련한 문서들도 이곳에 보존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이 의회문서보관소는 세 그룹의 운영 위원회로 나뉘어 지는데, 첫 번째 운영 위원회는 문서보관소 소장이 관리 책임을 맡고, 두 번째 운영 위원회는 총무가 관리 책임을 맡으며, 세 번째 운영 위원회는 만장일치나 과반수이상으로 국회에서 선출된 아키비스트(Archiviste)들이 관리 책임을 맡도록 하였다.<sup>10)</sup> 근대적 문서보관소의 역사는 바로 이 시기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sup>11)</sup>

“봉건제를 해체하기로 결정한” 1789년 8월 4일은 국립문서보관소의 역사에서도 뜻 깊은 날이다. 기록보관업무 책임자 선거에서 지역구가

---

8) Ernest Posner, “Some aspects of Archival Development since the French revolution”, *The American Archivist*, v.3, July, 1940, pp. 159-172, pp. 161-162.

9)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Éd. Kent et Lancour, New York, 1968, vol. 1, p.516.

10) Henri-Léonard Brdier, *op. cit.*, p. 2.

11) Association des archivistes français, *Manuel d'archivistique : théorie et pratique des archives publiques en France*, Seupen, 1970, p. 326.

파리인 국회의원이자, 국회 대변인을 맡고 있던 아르몽-가스통 카뮈 (Armond-Gaston Camus)<sup>12)</sup>가 만장일치로 선출된 것이다.<sup>13)</sup> 그는 혁명가로서 혁명 이전에는 변호사로 활동했었다. 그리고 그는 1789년 삼부회의 의원선거에서 사회적 불평등의 혁파를 주장하면서 관심을 끌고 파리 시 제3신분 의원이 된다.

1790년 5월 19일 기록보존에 관한 최초의 입법을 통해 문서분류안을 연구할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명한다. 1790년 6월 29일에 고생 (Gossin)은 연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그 안을 산정했고 1790년 9월 12일 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sup>14)</sup> 이로서 나온 1790년 9월 12일자 법령의 의미는 국립문서보존소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문서보관소의 기록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원칙이 처음으로 다음과 같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sup>15)</sup> ; “국립문서보존소는 왕국의 기본법을 이루는, 즉 공법, 법률, 각 도에서 생산한 법안의 모든 의사록을 보관한다. … 국립문서보존소는 일주일에 3일 시민들의 요구에 응해 개방될 것이다.”<sup>16)</sup>

12) 그는 혁명가로서 혁명 이전에는 변호사로 활동했었다. 그는 1789년 삼부회의 의원선거에서 사회적 불평등의 혁파를 주장하면서 관심을 끌고 파리 시 제3신분 의원이 된다. 그리고 후일 국민공회 의원으로 선출된 그는 공안위원회 위원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업적은 기록보존업무의 책임자가 된 그가 국립문서보존소를 설립하고 혁명 기간 동안 만들어졌던 다양한 집회문서들을 분류하고 정리했다는 점이다. 그는 그리고 다양한 보고서는 분석하기 위한 분석표를 입안하기도 했다. (Lucie Favier, *La mémoire de l'Etat ; Histoire des Archives nationales*, Paris, Fayard., 2004, p.11 ; Léon de Laborde, *Les archives de la France, leurs vicissitudes pendant la Révolution, leur régénération sous l'Empire*, Paris, Vve Renouard, 1867, pp.98-99). 그리고 그의 업적 중의 또 다른 하나는 잠정적인 문서 분류안을 수립했다는 점이다. (Henri-Léonard Brdier, *op. cit.*, p. 2 ; Léon de Laborde, *op. cit.*, pp.120-121).

13) *Ibid.*

14) Henri-Léonard Brdier, *op. cit.*, pp. 2-3.

15) Ernest Posner, *op. cit.*, pp.161-162.

16) Henri-Léonard Brdier, *op. cit.*, p.4에서 재인용. 이러한 법안이 통과하게 된 또 다

그러나 이 법령에는 국립문서보존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의회문서보존소의 구성만을 다루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행정 명령 중 아키비스트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아키비스트는 6년 동안 그 업무를 수행하고, 그 다음엔 선거를 통해 다시 뽑는다. 국회는 기록관리를 책임질 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한다. 아키비스트는 문서보관소에서만 기거한다. 그리고 아키비스트는 위원회가 동의한 이후에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곳을 벗어날 수 있다. 국회의원직만을 제외하고 그 어떤 직업이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다.”<sup>17)</sup> 따라서 이 법령은 카뮈가 의회에 제안한 바 있었던 구 프랑스 왕조의 모든 기록 문서들을 한 장소에 보관할 기관의 수립이라는 계획안보다도 후퇴한 것이었다. 국립문서보존소의 필요성은 의회도 동감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그것은 의회의 통제를 벗어나 의회의 기록을 보관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들은 거부감을 피력했던 것이다.

### 3. 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의 법령을 통한 국립문서보관소의 형성

48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이 법령은 여러 가지 부속 조항을 통해 보완된다. 이 모든 조항들을 나열하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이 아님으로 여기에서는 네 가지 측면, 즉 첫 번째로 법령에 규정된 문서보관소의

---

른 이유는 1770년의 경우에 파리에 문서보관소가 700개로 분산된 것을 포함하여 왕국 전체적으로 약 5700개의 문서보관소에 분산 보존되고 있는 것을 국립문서보관소로 통합하려는 것이었다. (HILDESHEIMER, Françoise. 1997. Les Archives de France, memoire de l'Histoire. Numero hors-serie de la revue Histoire et archives. Paris, Champion, P. 27).

17) *Ibid.*, p. 4.

정의를 본 뒤, 두 번째로 문서의 중앙 집중과정과, 세 번째, 모든 문서의 중앙 집중화 시도와 그 좌절과정을 살펴 본 뒤, 네 번째로, 역사적인 문건이라고 규정된 문서의 성격과 역사적인 문서의 국립중앙도서관으로의 이전 원칙을 연구한 뒤, 다음으로 문서 수집과 분류, 마지막으로 문서공개 원칙이 정착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문서보관소의 정의

오늘날처럼 18세기에 ‘Archives’라는 용어는 문서를 보관하는 장소라는 의미와 문서 그 자체를 동시에 의미했다. 그러나 ‘Archives’라는 의미는 오늘날의 정의보다 유달리 훨씬 더 제한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단 하나의 의미로서 증명할만한 가치를 가진 문서들과 행정적인 이유에서나 법률적인 이유에서 보관이 반드시 필요한 문서를 의미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나 행정기관의 활동에 대한 증거자료로서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영주나 도시 및 대학의 특권과 관련된 증거기록을 보존하는 의미였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1751년에 투생(Toussaint)이 편집한 백과사전 첫 판의 ‘Archives’의 정의이다 ; <<고문서란 한 집안, 한 도시, 한 왕국의 법률과 요구사항, 특전, 특권을 포함한 옛날의 증서 혹은 특허장을 의미한다.>><sup>18)</sup> 또한 이 시기의 기록보존소는 열람기능이 소수의 사회 엘리트에게만 허용되었다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의 법령에는 사실상 ‘Archives’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다만 국립문서보관소가 공화국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표상을 담을 그릇으로 표현되어 있다.(1조) 이는 사실상 공화국 체계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화국

---

18) Denis Diderot. *Encyclopédie, ou Dictionnaire raisonné des sciences, des arts et des métiers, par une Société de gens de lettres.*. Paris, 1755-1765, Articles ; Archives.



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 보인다.<sup>19)</sup>

여기에서 공화국의 표상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후속 조항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소장하여야 하는 보관 문서와 물품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다. 동법 2조에 의하면 국립문서보관소에 보존할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확히 기술하고 있다. 먼저 혁명 국회에서 생산한 문서들을 보존할 것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sup>20)</sup> 입법 문서들을 통해 공화국의 정당성과 법률적 근거를 문서보관소에 보존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sup>21)</sup> 다음으로 국립문서보관소에서는 공화국이 발행하거나 설정한 화폐, 도량형 그리고 국새 등을 보존할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sup>22)</sup> 즉 공화국이 발행하거나 설정한 기준과 근거를 바로 이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함으로써 위폐와 도량형과 관련된 혼란 상황을 막고자 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도안에 국가 상징체계를 부조함으로써 공화국의 위대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립문서보관소에는 공화국의 존립과 관련된 외국과의 조약(2조 8항), 국유재산의 목록(2조 9항), 국외 국유재산의 목록(2조 10항)을 소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 19) 특히 바베프를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공화국을 파괴하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려던 혁명 시도가 있었던 상황 맥락에서 공화국의 장점을 설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20) 먼저 1항에 의하면 삼부회의 소집부터 개회까지 삼부회와 관련된 예비활동과 관련된 문서들과 2항에 규정된 국회의 활동과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문서들 마지막으로 입법부가 문서보관소에 소장하기로 결정한 모든 문서들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2조 13항)
  - 21) 이러한 공화국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문서들에는 입법부 기록과는 성격을 달리 하지만 국민투표와 관련된 의사록도 포함된다(2조 3항). 이러한 규정은 공화국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민사행정공무원, 경찰서장 그리고 법원재판기록을 각 도의 법정이 각 컬렉션에 보관하거나 혹은 누락시킨 모든 문서들을 국립문서보고나소에서 관리할 것이라는 동법 2조 1항의 규정에서 알 수 있다.
  - 22) 공화국 국새의 보존한 규정은 동법 4항이며 화폐들과 관련된 규정은 5항에 수록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도량형의 원기에 관해서는 6항에 규정되어 있다.

사실상 이러한 규정은 국립문서보관소가 의회기록보존소에서 출발하고 그 전통을 계승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국립문서보관소의 더 중요한 가치는 국가의 존립기반과 관련된 문서와 원기를 보존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국립문서보관소가 국가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곳으로서 자리 매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국립문서보관소의 관리주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공화국 국립문서보관소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국립문서보관소의 관리 주체인 문서보관소 위원회는 국회의원이거나 혹은 행정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거를 통해 구성되도록 하였다(2조 7항). 행정부에 해당하는 행정위원회와 입법부가 국립문서보관소의 주체임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입법부가 사실상 국립문서보관소의 관리 주체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동법 2조 13항에 규정된 바대로 입법부가 여기에 소장하기로 결정한 모든 문서를 규정하며 입법부만이 유일하게 문서보관소의 장소를 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에서 알 수 있다. 더욱이 후술하게 될 “잠정문서기록분류기관”(Agence temporaire des titres)의 기관원이나 각 도의 분류 담당자는 사실상 그 임기가 입법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으므로 입법부의 관리 기능은 더욱 더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하자면 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의 법령에서 ‘Archives’의 정의는 공화국의 표상과 관련된 문서 및 입법부의 활동과 관련된 문서들을 보관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공화국 ‘Archives’의 관리 주체는 입법부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항이 3조이다. “국립중앙기관과 마찬가지로 국립문서보관소에 속한 기록물들의 모든 공공보관소는 입법부의 감독과 문서보관소 위원회의 감독 하에 있다.”

## 2) 모든 기록문서의 중앙 집중화 천명과 좌절 - 각 문서보관

## 소 행정의 중앙집중

혁명 초기 몇 년 동안 모든 기록의 국립문서보존소로의 중앙 집중의 가능성이 타진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빠르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은 지적되어야 한다. 먼저 1790년 8월 7일 법령은 파리 시에 분산되어 보존되었던 몇 가지 중요한 문서보존소들의 통합을 결의했다.<sup>23)</sup>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1793년 2월 20일 법령은 모든 기록문서들을 한 장소에 보관할 것을 명하기도 했다.<sup>24)</sup> 그리고 혁명력 2년 브뤼메르 12일(1793년 11월 2일)에 국민공회는 기록문서의 분류와 중앙집중이 공화국 아키비스트의 권위 하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명함으로써 문서기록의 관리와 보존이 국가의 임무임을 분명히 했던 것이다.<sup>25)</sup>

그러나 프랑스 국립문서보존소의 모든 체계의 토대를 이루는 법령인 1794년 6월 24일(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 법령에 의하면 그 이전 시기까지 존재하던 지방문서보관소 귀속문서의 요약본을 국립문서보존소에 귀속시키도록 함<sup>26)</sup>에 따라 사실상 분산된 문서들의 중앙집중화 계획은 후퇴한다. 즉, 문서보존의 중앙집중화는 지나간 해프닝에 지나

---

23) Léon de Laborde, *Les archives de la France, leurs vicissitudes pendant la Révolution, leur régénération sous l'Empire*, Paris, Vve Renouard, 1867, pp. 47-48.

24) *Ibid.*, p.49.

25) Henri-Léonard Brdier, *op. cit.*, p. 5.

26) 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 법령 2항의 부속조항 2조-13항와 4조. 어너스트 포스너는 1794년 6월 24일 법령을 통해 분산된 지방문서를 국립문서보관소에 이송할 것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하였으나, 본 연구자의 견해로는 지방문서보관소 귀속자료의 국립문서보존소로의 이송으로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귀속문서 요약본의 국립문서보관소로의 이전을 규정한 것으로 본다. (Ernest Posner, *op. cit.*, p. 161). 어너스트 포스너는 동법 2조 1항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2조 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89년 삼부회의 소집부터 개회까지 삼부회와 관련된 예비 활동과 관련된 컬렉션 ; 민사 행정 담당 공무원, 경찰서장 그리고 법원 재판 기록은 각 도의 법정이 이 컬렉션에 보존하거나 혹은 누락시킨 모든 문서들을 국립문서보관소에서 관리할 것이다.”

지 않았던 것이다. 1796년 10월 26일에 입안된 법령에 의해 독립문서보존소의 설립이 이루어졌던 것이다.<sup>27)</sup>

그러나 한 가지 부연할 것은 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의 법령을 통해 처음으로 현존하는 기존의 문서보관소와 기록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문서보관소를 포괄하는 문서보관소간의 유기적인 행정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sup>28)</sup> 동법 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립중앙기관과 마찬가지로 국립문서보관소에 속한 기록물들의 모든 공공보관소는 입법부의 감독과 문서보관소 위원회의 감독 하에 있다”는 원칙이 천명된 것이다. 그리고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모든 문서보관소의 문서들을 관리하고 각 문서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법 4조에는 각 문서보관소가 소유한 각 항목의 문서를 “정해진 지시에 따라서 요약 보고서”를 만들고, “각 요약 보고서의 사본을 국립문서보관소로 보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이미 존재하거나 혹은 존재하게 될 여러 행정 기관의 기록보존담당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 원칙이라고 동법5조에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기존의 문서보관소에 소장된 기록문서의 관리 주체와 관리 책임은 문서보관소 위원회와 의회가 가지게 된 것이다.

### 3) 역사적인 문서의 국립중앙도서관으로의 이전

프랑스 혁명이 기록보존의 역사에 미친 영향은 국가가 과거의 기록유산의 보호를 존중해야 한다는 국가의 역할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혁명의 초기 과정 동안 다수의 역사기록물이 중세체제의 유산물로 간주되어 소실되었다.<sup>29)</sup> 그러나 1794년 6월 24일(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의 법령은 중세 기록물의 보존을 강조하고 있다.<sup>30)</sup>

---

27) Léon de Laborde, *op. cit.*, p.115.

28) Ernest Posner, *op. cit.*, p. 161.

29) *Ibid.*, p. 161.

먼저 이 법령은 “잠정문서기록분류기관”(Agence temporaire des titres)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관에 대해 15항부터 28항까지를 할애하고 있을 정도로 그 중요성을 인정한 기관이다. 이 기관은 세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 기관은 공화국 문서 중에서 중요하면서도 법률적인 문서자료를 분류하며(10조, 11조), 두 번째 기관은 어떤 관심도 끌지 못했던 국유재산목록을 분류하며(8조), 세 번째 기관은 교육에 필요한 역사, 과학, 예술과 관련된 그림과 필사본의 분류임무를 맡는다고 규정하고 있다(12조). 즉, 이제 중세 기록유산과 그 이전 시기 필사본까지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국가 교육과 관련하여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세 번째 기관에서 분류한 문서들은 파리에 소재한 국립문서보관소가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전해야 한다(12조)<sup>31)</sup>라고 규정함으로써 역사와 관련된 사료를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송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잠정문서기록분류기관”의 실행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 1794년 11월 18일(혁명력 3년 브뤼메르 28일)에 국민공회는 법령을 통해 “잠정문서기록분류기관”의 구성원을 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이 업무를 시작한 것은 동년 11월 21일(혁명력 3년 프리메르 1일)이다.<sup>32)</sup> 이제 국가는 예술 작품이나 당대의 기록만이 아니라 과거에 쓰여진 기록유산 또한 분류, 보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30) 동법 12조. 그러나 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의 법령 9조 1항에는 순수한 중세 기록물들의 폐기를 규정하고 있어서 법령 자체가 다소 모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31) Henri-Léonard Brdier, *op. cit.*, p. 9. 동법 1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재산이 몰수되었거나 몰수될 예정의 모든 사람들의 컬렉션과 캐비넷 자료를 분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유재산 목록이든 행정 목록이든 모든 기록문서보관소의 자료를 분류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에 이용될 수 있는 역사와 과학 그리고 예술 관련 현장과 필사본을 파리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지식을 축적하고 보존하기 위해 보존한다. 그리고 도에서는 각 지역의 도서관에 보존한다. 문서보관소 위원회에서 제공할 목록들은 도서관들을 통해 교육 위원회에 전달될 것이다.

32) *Ibid.*, p.11 ; Léon de Laborde, *op.cit.*, pp.74-76.

### 그렇다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될 역사적인 문건이란 무엇인가?

카뮈는 <<역사적인 문건>>에 대해 그것은 ‘국가의 탄생과 관련한 단 하나의 헌장’, ‘특권과 관련한 단 하나의 문서’, ‘공공기관의 설립과 관련한 단 하나의 문서’, ‘국가의 법률과 관련한 단 하나의 문서’, 오리지널 문서를 가지고 있던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던 헌장의 복사본이 있는 등록부, 마지막으로 외교사건, 등등의 문서들이라고 보고 있다.<sup>33)</sup>

33) Léon de Laborde, *op. cit.*, p.123. 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의 법령은 앙시앵 레짐의 역사·기록학적개념의 유산이다. 로베르-앙리 보티에(Robert-Henri Bautier)의 정의에 따르면 “18세기와 혁명의 시기 그리고 심지어 제1제정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상 문서보관이라는 주제와 관련한 개념들은 1789년 이전이나 1789년 이후에도 정확하게 같은 의미였다. 앙시앵 레짐 시기의 ”기록관리인(Archivaire)“들은 프랑스 혁명의 문서분류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794년의 법률 조항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해야 한다면 먼저 17세기와 18세기의 문서의 성격과 그것의 분류관행을 먼저 이해해야만 한다.

어떻게 문서보관소를 정의해야할까 :독점적으로 증명할 역할

오늘날처럼 18세기에 옛 문서보관소라는 용어는 문서를 보관하는 장소라는 의미와 문서 그 자체를 동시에 의미했다. 그러나 옛 문서라는 의미는 오늘날의 정의보다 유달리 훨씬 더 제한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단 하나의 의미로서 증명할만한 가치를 가진 문서들과 행정적인 이유에서나 법률적인 이유에서 보관이 반드시 필요한 문서를 의미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1751년에 투생(Toussaint)이 편집한 백과사전 첫 판의 고문서의 정의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고문서란 한 집안, 한 도시, 한 왕국의 법률과 요구사항, 특전, 특권을 포함한 옛날의 증서 혹은 특허장을 의미한다.>>따라서 <<고문서>>라는 용어에서 행정적 혹은 법률적 활용을 위해 보존된 문서라는 의미와 또 다른 의미를 구별 지어야만 한다. 1783년 출판된 드니쟈르(Denisart) 법학판례집 재판에서 의심의 여지없이 이 항목의 지필을 맡은 사람이자, 최초의 문서보관소 관리인이었던 변호사 카뮈(Camus)는 다음과 같이 아주 명확하게 정의한다. <<고문서 보관소에서는 정확히 말해 증서, 유일본 증서, 면허장, 특허장, 계약서만을 받는다. 역으로 또 다른 보관소에서는 모든 종류의 서류를 받는다.>>

여기서 카뮈(Camus)가 말한 그리고 여전히 증명하고 교정하고 보존될 필요성

잠정문서기록분류기관의 가장 큰 임무중의 하나였던 폐기<sup>34)</sup> 원칙의 준수를 주저한 잠정문서기록분류기관 구성원들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역사적인 문서들을 이전시키기 위하여 역사적인 문건들을 따로 분류하려고 노력한다. 1789년부터 그들은 별도로 없이 전체 문서들이 국립도서관이나 국립문서보관소에 보내지지 않은 것을 막기 위해 입법부에 중앙정부에서 생산된 문서들이 잠정문서기록분류기관을 거치지 않고 있음을 자세히 보고한다.<sup>35)</sup>

잠정문서기록분류기관 분류를 기다리는 문서들을 자기 기관에 가져 오는데에 대한 애착을 통해서만 그 필요성을 역설한 것만은 아니다. 그들의 관심사항은 극히 평범한 것이었다. 사무국은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고 그 구성원의 미래는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분류할 문서들이 있는 기간에만 임금이 지급되었다.<sup>36)</sup>

더 효과적인 수단은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되기 전에 이 문서들을 분류하여 조직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1800년 3월에 분류사무국은 객관적인 분류 방식, 즉 각 도에서 분류 작업을 경험했던 담당자들 처럼 파리 소재 문서분류사무국은 분류작업 후에 발견한 모든 유사한 역사 기록물들을 정리하여 정리 목록을 생산하는 기관<sup>37)</sup>이라고 주장함

---

이 있는 <<모든 종류의 문서>>라는 의미는 고찰할 필요성이 자연히 생기지만 그것은 역사적 연구와 문헌학적 연구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학문분과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것을 보관할 장소는 적어도 18세기 이래로 문서보관소가 아닌 도서관이었다. 국립 “문서보관소”(dépôt d'archives)의 부재로 인해, 사실상 모든 종류의 문서는 학식 있는 자와 전문지식을 갖춘 아마추어들이 필사본의 컬렉션과 목판화, 훈장, 심지어 동상의 컬렉션들로 구성된 기록물들을 진열해 놓은 도서관에 보존되곤 했다.

34) ‘잠정문서기록분류기관’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문서들의 분류라는 차원과 동시에 ‘다량의 불필요한 문서들의 폐기’ 때문이기도 했다. (Léon de Laborde, *op. cit.*, p. 76).

35) Léon de Laborde, *op. cit.*, pp. 77-73.

36) Henri-Léonard Brdier, *op. cit.*, p. 10. 이 기관은 6개월만 지속되기로 한 한시적 기관이었다. 동법 18조.

으로써 자신의 위원회의 존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카뮈는 이전시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역사적 기록물들을 보존해야한다는 생각을 접고 국립문서보관소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sup>38)</sup> 1801년에 그는 자신보다 앞선 분류사무국의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트레조 데 샤르트(Trésor des Chartes)에 특수한 조건을 부여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러한 예외 규정을 문서의 입증가치(*la valeur probatoire*)라는 용어를 통해 합리화 한다. 문서들이야말로 국가주권의 인증서류라는 것이다.

또한 트레조 데 샤르트 이상으로 카뮈는 역사를 위해 보존된 모든 문서들의 조건 역시 고찰한다. 1801년에 그는 문서 분류사무국에서 장차 국유재산 항목분류국 혹은 법률분류국과 마찬가지로 역사기록물 사무국(*Bureau des monuments historiques*)으로 보직을 옮긴다.<sup>39)</sup> 이 같은 보직변경은 사무국에 대한 자신의 통제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역사적 문서들이 국립문서보관소에 아주 장기간 동안 보존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그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혁명력 11년 브뤼메르 17일에 나온 그의 보고서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개념을 발전시킨다.

<<이 역사적 기록물들은 각 도에서 보존해야 하는가 아니면 파리로 이전시켜야 하는가 만약 마지막 경우에 그것들은 국립문서보고나소에서 보존해야 하는가 아니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해야 하는가? 파리의 보관 장소는 불확실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현장과 특허장이... 보관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보존하는 중요 문서 가운데 현장과 특허장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역사적 문건들의 상당량의 보관장소이기도 하다. 기록보관인의 주요 업

---

37) *Ibid.*, p. 139.

38) *Ibid.*, pp. 143-144.

39) *Ibid.*, pp. 145.



무 중의 하나는 이러한 증서들의 분석과 분류 그리고 색인을 만드는 것이다. 국립문서보관소에는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특수하게 설립된 사무국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한다. <<나는 나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국립문서보관소에도 유익할 것이다.>><sup>40)</sup>

1804년에 카뮈를 계승한 도누(Daunou)<sup>41)</sup>는 역사적 기록물의 보관 장소에 대한 논쟁에 중지부를 찍어야 하는 임무를 무척이나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비칠 정도로 신중했다. 하지만 그가 치밀하게 구상한 국립문서보관소의 분류 틀은 제도의 기원에 문제에 속한 법률적 문서 항목, 국유재산과 관련된 문서항목, 행정관련 문서 항목, 판례 관련 문서 항목, 역사적 문건 사무국의 보호 하에 남아있는 것들, (이것은 후일 <<역사 항목>>으로 명명된다)로 공정하게 분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카뮈(Camus)의 전통을 이어 역사적 문건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문서들이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 데 이것은 참으로 역설적이다. <<역사>> 항목의 문서들은 역사적 진실성의 가치를 아는 문서보관소에서만 보존되어야 하는가?

#### 4) 역사 항목이 제외된 이유-사유재산과 국유재산의 보호 그리고 법률의 보존

무엇보다도 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의 법령은 혁명의 소송돌이에서 사유재산권과 국유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에서 나온 법령이었다. 특히 국유재산권의 확립 필요성은 혁명을 반대하던 외국

40) Léon de Laborde, *op. cit.*, pp. 143-145.

41) 도누(Daunou)는 기록관리 전문가가 아니라 팡테옹 도서관 관리인이었다.

과의 전쟁에서 필요한 군수물자 조달, 배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다. 사실상 동법에는 무엇보다도 국유지 항목의 정리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 점을 보여주고 있다. 동법 8조에 의하면 문서보관소 위원회가 가장 먼저 할 일을 “국유재산의 환수에 기여할 국유재산목록의 분류에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14조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견될 국유재산과 공공 재산과 관련한 필사본들은 국립문서보관소의 국유지 항목에 보내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법령이 국유지 항목의 정리에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법령에는 국유재산만이 아니라 사유재산의 보호에도 깊은 관심을 피력한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동법 10조의 다음과 같은 규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국민공회에서 제정된 입법위원회의 문서와 보고서와 관련하여 그리고 그 다음으로 존재하는 인멸될 위험성이 높은 모든 재판관련 기록보존소에서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의 유지에 필요한 제반 규정들을 정한 모든 문서들의 분류를 수행한다.”

## 5) 문서의 수집과 분류

먼저 이 법령에 의하면 문서의 분류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과 법률 및 불후의 명작에 대한 식견이 높은 전문가들을 문서보관소 위원회에서 9명 정도 추천하며 이들을 국회에서 임명할 것이라는 규정이 있다. 이렇게 임명된 자들의 모임을 “잠정문서기록분류기관”(Agence temporaire des titres)이라 명하고 있다. (동법 16-17조) 그리고 그들의 직무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18조) 각 도의 경우에는 문서분류담당자라(19조)는 직함 하에 전문가 3인<sup>42)</sup>

42) 그러나 각 도 중에서 구체제 시기의 공공기관 문서보관소, 예를 들면 지방회계

을 문서보관소 위원회가 추천하고 국회에서 임명하며 그 직무기간은 4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20조)

잠정문서기록분류기관의 기관원들과 문서분류담당자에게는 모든 문서가 공개되며, 그들의 문서분류 작업에 모든 문서들이 제출되도록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문서기록은 교회나 수도원에서 보존하는 문서들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22조) 1790년 11월 5일에 반포된 규정을 폐기하는 것으로서 교회와 수도원의 문서들을 통해 국유지 목록을 재정비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또한 문서 수집과 관련하여 23조에는 현재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활동기관을 제외하고, 동법 12조에 규정된 그리고 공화국에 귀속되어야 할 문서와 필사본 및 다른 유형의 서류들의 소지자 혹은 보관자는 그것을 국가에 반납하거나 혹은 의심이 든다고 생각하자마자 자신의 거주 지역의 관할 국가기관에 적어도 한 달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분류 담당자들은 과거 공무원 혹은 한 달 동안 어떠한 신고 절차도 밟지 않은 그 유산 상속자의 캐비닛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가한다. 인수 할 경우에 다음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즉, 국가 기관원을 동행시키거나 국가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 것들에 봉인을 붙일 수 있는 경찰과 동행하도록 한 것이다.

## 6) 문서의 공개

프랑스 혁명 시기의 문서보관소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세 번째 기여는 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 법령의 37항에 의해 채택된 모든 시민에게 문서보관소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 원칙이었다. 37항에 의하면 모

---

원(Chambres des comptes), 회계소송법정(Cours des aides), 지방재무국(Bureaux des finances) 등의 문서를 보관한 여러 거대한 여러 거대한 문서보관소가 존재하는 도들에서는 분류담당자의 수를 9명 이내로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동법 20조)

든 시민은 문서보관소의 비공개된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은 문서보존소에 소장된 문서의 생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sup>43)</sup> 또한 문서의 열람에 있어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적절하고 신중한 감독을 행사하면서 모든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열람 문서에 대한 사본작성이나 발췌의 경우 종이 한 장에 15줄을 쓰는 조건으로 허가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시민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어떤 방도도 이 법안에는 존재하지 않았음은 밝혀두어야 할 것이다. 문서의 공개가 이루어진 국립 문서보관소의 총 책임자로서 레옹 드 라보르드(Leon de Laborde) 때부터였다. 그는 이따금씩 하루 내내 자료를 열람하도록 허가했던 자신의 전임자인 르트론느(Letronne)가 연 바 있는 대중들이 문서를 읽을 수 있는 열람실의 기능을 향상시켰다.<sup>44)</sup>

#### 4. 결론

결론적으로 프랑스 혁명 이후 기록 보존에 관한 국가의 책임,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권 보장 등의 전통이 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의 법령을 통해 확립되었다. 그리고 동법을 통해 입법부와 문서보관소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통일적인 관리 체계가 확립되었으며, 기록 보존 장소는 지방분권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이 확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 이 법령이 발효된 이후 60년 동안 완벽한 정신적 혼란

---

43) 동법 37조 ; Ernest Posner, *op. cit.*, p. 162.

44) Henri-Léonard Brdier, *op. cit.*, p. 24 ; Michel Duchein, *Les obstacles à l'accès, à l'utilisation et au transfert de l'information contenue dans les archives : une étude RAMP*, Unesco, Paris, 1983, p. 3.

상태에 있게 된다. 행정 규정에 의거하여 문서의 <<창고(arsenal)>>로서 알려진 국립문서보관소는 <<역사의 공간>>으로 인식되어졌지만 사실상 그 역할은 이 시기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시에 역사가들은 상태가 어떠한 문서보관소의 모든 문서는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19세기 동안 프랑스 국립문서보관소의 역할에 대한 개념정립의 과정과 어떤 문서를 보존할 것인가라는 문서의 제도화로서 그 의미를 가지는 기관의 역할에 대한 두 가지 논쟁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기록관리자들에게도 논쟁거리이다.

사실상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1979년 1월 4일 법령이 개정된다.<sup>45)</sup> 이 법령은 사실상 역사적인 기록물의 보존 장소로 국립문서보관소를 선택하고 그것의 보존과 관리를 처음으로 국립문서보관소에 맡겼다는 점이다. 이 법령에 대한 연구는 후일의 열린 가능성으로 놓아 둔 채 본 연구자는 이 법령의 특징만을 언급한 채 글을 마치고자 한다. 이 법의 특징은 공공 문서에 대한 관리 규정과 공공 문서의 훼손 시 엄격한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sup>46)</sup> 특히 역사적 문서로 분류된 문서의 파괴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동법 13조), 역사적 문서를 소유한 자는 문서보관소 관리 당국에 고지하고 문서를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17조) 이러한 법 조항을 통해 역사 기록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45) 이에 대해서는 주경철, “프랑스의 고문서보관소 제도”, 『역사비평』, 1997년 봄호, 1997. 2, pp. 100~107.

46) 공무원이 직무 중에 소지하였던 공문서를 착복한 경우에는 고의 유무에 상관 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28조) 그리고 문서 관리를 맡은 공무원들이나 그 대리인이 합법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될 수 없는 전문적인 기밀 사항을 누설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29조)

<<부록>>

## 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의 법령 전문

-국가의 표상을 위하여 수립된 국립문서보관소 조직법-

### 조직 구성의 기본 원칙

1조 - 국가의 표상을 위하여 세워진 문서보관소는 공화국의 국립 문서보관소이다.

2조 - 이 문서보관소는 다음과 같은 문서들을 보존한다.

1항 - 1789년 삼부회의 소집부터 개회까지 삼부회와 관련된 예비 활동과 관련된 컬렉션 ; 민사 행정 담당 공무원, 경찰서장 그리고 법원 재판 기록을 각 도의 법정이 각 컬렉션에 보존하거나 혹은 누락시킨 모든 문서들을 국립문서보관소에서 관리할 것이다.

2항 - 국회의 활동과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 기록들

3항 - 국민 투표와 관련된 의사록

4항 - 공화국의 국새

5항 - 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유형의 화폐들

6항 - 도량형의 원기

우리가 여기에서 보존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7항 - 국회 활동보고를 위한 문서보관소 위원은 국회의원과 행정 위원회위원 중에 선거를 통해 뽑는다.

8항 -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들

9항 - 국가 채무와 같은 국유재산의 전체 목록

10항 - 국외 국유재산의 목록

11항 - 그냥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성(性)별 수를 구분해 내는 방식으로 매년 출생자와 사망자의 인구조사의 통계 비교 결과 ; 인구 통계의 작성을 할 시기와 통계의 형태는 동년 제르미날 12일 행정명령에 의해 자세히 규정해 놓았다.

- 12항 - 동법 4조에 규정된 것과 관련하여 공화국 내의 다양한 보관소, 특히 베르사이외(Versailles)와 외무부의 문서보관소 및 파리와 부처 별 각 기관에 분산 존재하는 모든 문서들의 요약 보고서
- 13항 - 입법부가 여기에 소장하기로 결정한 모든 문서들, 입법부만이 유일하게 문서보관소의 장소를 정할 권리를 가진다.
- 3조 - 국립중앙기관과 마찬가지로 국립문서보관소에 속한 기록물들의 모든 공공보관소는 입법부의 감독과 문서보관소 위원회의 감독 하에 있다.
- 4조 - 사실상 현존하는 혹은 공화국의 모든 범위 내에 설립되어진 목록과 문서를 보관하는 모든 장소에서 자신이 보유한 내용물을 정해진 지시에 따라서 요약 보고서를 만든다. 그리고 각 요약 보고서의 사본을 국립문서보관소로 보낸다.
- 5조 - 이미 존재하거나 혹은 존재하게 될 다양한 행정 기관의 기록보존 담당자들은 그들의 즉각적인 종속이라는 그리고 법률에 의해 한정된 직접적인 대응이라는 권리 침해 없이 앞의 두 개조의 규정으로부터 전혀 예외일 수 없다.
- 6조 - 몇몇 장소에 분산된 모든 국유지 목록은 파리에 설립될 그리고 지금부터 문서보관소 위원회에서 만들 최초의 요구와 관련하여 여기에 이전되어질 가능성이 있는 국립문서보관소의 국유지 항목 보관 장소에 귀속된다.
- 7조 - 경찰청 문서보관소의 조직과 관련된 1790년 9월 4일과 9월 7일의 법령들과 1791년 12월 27일 법령 및 1792년 10월 10일의 법령은 그 모든 규정과 함께 그 효력은 유지된다.

### **전반적인 규정과 문서의 분류**

- 8조 - 즉각 문서보관소 위원회는 국유 재산의 회수에 기여할 국유재산 목록의 분류에 착수할 것이다. 다음으로 특히 동법 12조에 규정된 보

관소에서 발견될 몇몇 부분은 다음에서 말할 국유 재산 항목에 보내질 것이다. 다음으로 그 목록은 국유재산 항목에 보내질 문서와 함께 문서보관소 위원회에 제공될 것이다.

9조 - 다음의 사항들은 지금부터 무효화될 것이다.

1항 - 순수한 중세의 목록들

2항 - 행정명령에 의해 자세히 규정된 내용 중에서 모순된 판정으로 인해 거부된 것들

3항 - 인정되고 이미 발견되었으며 이미 양도된 국유재산과 관련된 것들은 어떠한 유효성도 더 이상 가지지 않는다.

4항 - 1790년 이래로 결정된 국유화 된 재산을 포함한 것들

10조 - 또한 위원회는 국민공회에서 제정된 입법위원회의 문서와 보고서와 관련하여 그리고 그 다음으로 존재하는 인멸될 위험성이 높은 모든 재판관련 기록보존소에서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의 유지에 필요한 제반 규정들을 정한 모든 문서들의 분류를 수행한다.

11조 - 낙찰, 양도, 증서, 교환 그리고 상속, 지세, 부동산, 무형의 봉건적 권리 그리고 부적당하게 노예라고 불리는 자들의 소유권 상속을 포함하여 모순되는 모든 재판에서의 소유권의 유지에 그리고 법적 매매 혹은 법정에서 승인한 매매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문서가 포함된다.

12조 - 위원회는 재산이 몰수되었거나 몰수될 예정의 모든 사람들의 컬렉션과 캐비넷 자료를 분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유재산 목록이든 행정 목록이든 모든 기록문서보관소의 자료를 분류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에 이용될 수 있는 역사와 과학 그리고 예술 관련된 헌장과 필사본을 파리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지식을 축적하고 보존하기 위해 보존한다. 그리고 도에서는 각 지역의 도서관에 보존한다. 문서보관소 위원회에서 제공할 목록들은 도서관들을 통해 교육 위원회에 전달될 것이다.

13조 - 동법 앞 조에서 언급한 바대로 기록보관소들과 캐비넷에서 발견된



지도와 도면, 천문도 혹은 해도는 지도 교육을 위해 파리에 설립된 일반보관소에 모아질 것이다.

- 14조 - 현재 문서보관소에 보존되어 있는 인쇄된 책들은 국회에서 수행한 내용을 배포하기 위해 제본된 문서집들을 제외하고 모두 국립중앙도서관에 보존될 것이다. 그리고 통계자료, 삽화, 훈장, 예술과 관련된 또 다른 작품들의 향배는 교육위원회에서 수행할 조사 후에 결정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견될 국유재산과 공공 재산과 관련한 필사본들은 국립문서보관소의 국유지 항목에 보내질 것이다.

### **분류 수행 방법**

- 15조 - 동법 12조에 규정한 바대로 현장과 필사본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이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국립문서보관소 이외의 기록보관소에 소장된 풍부한 문서 자료들은 도처에서 두 가지 항목으로 분류될 것이다. 하나는 국유재산 항목이고 또 다른 항목은 관례 및 행정 항목이다.
- 16조 - 규정된 분류법을 따르기 위해 현장과 법률 및 불후의 명작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시민들 중에서 선출한다. 9명을 초과할 수 없는 전문가의 수는 분류작업에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비율로 문서보관소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 17조 - 문서보관소 위원회가 그 시민을 추천할 것이며 국회가 임명할 것이다. 그들의 모임은 “잠정문서기록분류기관”(Agence temporaire des titres)이라 명할 것이다.
- 18조 - 그들의 직무기간은 활동에 들어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일 것이다.
- 19조 - 각 도에서 분류 작업은 동법 16조에 규정한 바대로 전문가인 세 명의 시민으로 수행될 것이다. 그들은 문서분류담당자라는 명칭으로 불릴 것이다.
- 20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제 시기 공공기관의,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지방 의회, 지방회계원(chambres des comptes), 회계소송법정

(Cours des aides), 재무국(bureaux des finances) 등의 문서를 보관한 여러 거대한 문서보관소가 존재하는 도들에서는 분류 작업에 참여하는 시민의 수는 우선 문서보관소 위원회의 심사에 따른다는 도의 행정원칙의 준수를 근거로 9명을 한도로 증가될 수 있다.

21조 - 분류를 담당할 시민은 문서보관소 위원회가 추천하고 국회가 임명한다. 그들은 국가기관에 의해 각 지역을 담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직무기간은 그들이 임명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직무를 끝내야 한다.

22조 - 모든 문서보관소의 문서와 서류는 그들에게 공개되며, 그들의 분류작업에 제출된다. 이하의 성당과 수도원의 문서와 관련된 1790년 11월 5일의 행정명령은 폐기된다. 거기에 여전히 붙여진 모든 봉인은 우선 분류담당자가 청구하여 봉인을 뜯고 지역의 국가기관에 신고한다.

23조 - 현재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활동기관을 제외하고, 동법 12조에 규정된 그리고 공화국에 귀속되어야 할 문서와 필사본 및 다른 유형의 서류들의 소지자 혹은 보관자는 그것을 국가에 반납하거나 혹은 의심이 든다고 생각하자마자 자신의 거주 지역의 관할 국가기관에 적어도 한 달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분류 담당자들은 과거 공무원 혹은 한 달 동안 어떠한 신고 절차도 밟지 않은 그 유산 상속자의 캐비닛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가한다. 인수할 경우에 다음의 절차를 밟는다.

1항 - 국가 기관원을 동행시키거나 국가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 것들에 봉인을 붙일 수 있는 경찰과 동행한다.

2항 - 문서보관소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야 새로운 교육을 받은 후에야 인수할 수 있다.

24조 - 즉시 집행을 할 것이며 그 후에 훨씬 잘 정리할 때까지 그들이 발견해 낸 각각의 문서보관소에 잠정적으로 소장되어 있는 국유재산 목록의 목록표를 문서보관소 위원회에 보내질 것이다.

- 25조 - 동법 12조에 따라 각 지역의 도서관에 보내져야 할 것으로 짐작되는 서류들은 국가 기관이 분류 담당자에게 보낸다.
- 26조 - 과거의 문서보관소와 또 다른 문서보관소에 보존된 법률 항목과 관련된 서류들은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될 것이다. 그 하나의 범주는 폐지된 것과 두번째 범주는 잠정적으로 보존될 것이다.
- 27조 - 분류 담당자는 동법 11조에 적시된 원칙에 따라 두 범주로 나누어 편성할 것이다. 그것은 각각 폐기와 보존이라는 구분표시를 달게 될 것이다. 그들은 동법 4조에 규정된 바대로 위원회에 간략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의가 과거의 문서보관소에서 열렸던 관례문서보관소에 잠정적으로 그것들을 맡겨야 한다. 별도로 수립되어 있는 이러한 종류의 문서보관소에 그것들은 자신이 책임진 모든 자료들의 보존을 잠정적으로 수행한다.
- 28조 - 국가 기관은 예외 없이 모든 문서보관소에 대한 감독권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보존 방식, 보관인의 질, 보존비용에 대한 관찰 결과를 분류 담당자와 마찬가지로 위원회에 권고할 것이다.

### **파리 문서보관소의 설립**

- 29조 - “잠정문서기록분류기관”(Agence temporaire des titres)은 활동에 들어가자마자 파리에 보존된 모든 문서들의 분류 작업과 각 도에서 보내 줄 목록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것이다.
- 30조 - 이 기관은 동법 9조에 적시된 바대로 폐기되어질 운명에 놓인 국유재산문서의 목록을 분류할 것이다.
- 31조 - 이 기관은 동법 12조에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야 하는 모든 문서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이송 문건을 추천할 것이다.
- 32조 - 동법 11조에 따라서 이 기관은 재산의 유지에 필수적인 보존되어야 하는 문서 범주를 분류 정리함으로써 법률 항목에서 폐기되어야 할 문건과 잠정적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문건을 추천할 것이다.
- 33조 - 분류작업은 국유재산 항목과 법률 항목 각각으로 분리된 문서보관

소의 보존은 어느 날인가 각각의 항목을 위해 세워질 두 명의 보관인이 파리에 보존할 것이다.

- 34조 - 두 명의 보관인은 문서보관소 위원회에서 추천되어질 것이고 국회의 동의로 임명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문서관리자에 종속된다.
- 35조 - 그들은 각각의 문서보존소가 세워질 예정지에 사는 자야 할 것이다.
- 36조 - 법률 항목의 보관인은 공화국의 국유재산의 회수에 관한 서신을 따라 착수하는 데에 필요할 서류와 등록부를 인수하고 발굴할 권리를 가진 법률 항목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 모든 연구를 진행할 권리를 가질 것이다.

### **일반 규정**

- 37조 - 모든 시민은 정해진 날과 정해진 시간에 모든 문서보관소에 보존된 비공개 된 문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문서의 열람에 있어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되며, 적절하고 신중한 감독을 행사하면서 모든 시민에게 공개되어질 것이다.  
요구되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본 작성이나 혹은 발췌는 종이 한 장에 15줄의 비율로 허가 될 것이다.
- 38조 - 종결된 소송이나 혹은 진행 중인 소송 혹은 봉건적인 성격이 없는 권리증서 혹은 소송에 관련된 문서를 작성한 모든 시민은 자신들의 문서들이 폐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즉 현 법률로 정해진 분류 작업의 종결 이전에 그 서류들의 반환 청구를 허가할 것이다. 보관인들이 이 조항이 발효되기 이전에 그 문서들이 자신에게 관계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보관인의 책임이 면해진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것을 되돌려 주는 것을 허가한다.
- 39조 - 파리 시와 분류 담당자 기관 그리고 색인 작업 담당기관, 즉 문서의 성격이 어떤 것이든 문서와 서류를 보존하는 곳에서 몇 가지 권한과 몇 가지 지시에 의해서 최근에 임명권을 행사한 경우는 명

백하게 취소된다. 그리고 이미 시행된 모든 활동은 이 법의 발효 이후에 즉각 중지된다.

그러나 기존의 기록보존소와 또 다른 성격의 문서보관소에서 실제 채용된 보관인들은 임명기간까지 잠정적이거나 그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임금 지급을 고려할 것이다.

- 40조 - 국립문서보관소에 채용된 사람들과 제르미날 12일 법령으로 세워진 법 집행 권한을 가진 보좌관들은 앞 조에 결정된 규정에 결코 포함되지 않는다.

### **문서분류 비용과 여러 기관의 처우**

- 41조 - 동법 16, 17조의 규정에 의해 파리에 임명된 잠정문서기록분류기관의 기관원 각각은 작업 시간 동안 매일 12권의 책을 받아 분류할 것이고, 어떤 형식적 절차 없이 문서보관소 위원회의 세 위원이 서명한 임금지불증서에 의거해 국고에서 매달 임금을 지불 받을 것이다.
- 42조 - 동법 19조의 규정에 의해 각 도에서 임명된 분류 담당자 각각은 하루 10권의 책을 받아 분류할 것이고, 어떤 형식적 절차 없이 국가기관이 서명한 임금지불증서에 의거해 각 도의 세금 수취인에게서 매달 임금을 지불 받을 것이다.
- 43조 - 분류 작업에 필요한 부대비용은 그 총액을 결제할 국회의 문서보관소 위원회와 재무 위원회가 국회에 요구할 것이다.
- 44조 - 동법 33조에 의해 파리에 세워진 국유재산 항목과 법률 항목의 두 명의 보관인 각각은 4000 리브르의 임금을 지급할 것이고, 사무원들에게는 2400 리브르의 임금을 지급할 것이다.
- 45조 - 문서 보관소 위원회는 맡은 바 임무가 종결되었을 때 그리고 부대비용이 더 필요한 경우에 일반회계 보고 그리고 분류 작업의 진행 과정을 일견할 수 있는 요약서를 동년 테르미도르(thermidor) 1일부터 매달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 46조 - 지금까지 분류 작업을 위해 그리고 사적문서를 제외한 문서들을 보존하기 위해 고용된 모든 기관원들은 그리고 동년 브뤼매르(brumaire) 12일 법령의 12조와 13조의 규정에 의해 면책된 모든 기관원들은, 즉 파리에 존재하는 문서보관소를 위해 그리고 각 도에 존재하는 문서보관소에 관하여 그들이 자신의 이전 임무, 즉 법률적으로 정당한 자신에게 남아 있는 임무를 주장하는 보고서를 직접적으로 혹은 각 도의 국가 기관의 정당한 이유를 통해 그리고 국가 기관의 주선으로 문서보관소 위원회에 호소할 수 있을 것이다.
- 47조 - 이러한 보고서를 송달하거나 혹은 발송하는 행위의 기한은 이 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두 달 이내가 될 것이다. 이는 결제가 되지 않은 미지급 임금 전부를 문서보관소 위원회와 재무 위원회의 보고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48조 - 국립문서보관소에 관한 브뤼매르(brumaire) 12월의 법률과 분양된 국유재산에 관한 프리매르(frimaire) 10일의 법령은 이 법에 부합되지 않은 모든 경우에 그 법조항은 모두 폐기된다.

감독관에 의해 서명됨

모넬(Monnel)에 의해 서명됨

## <참고문헌>

### <1차 사료>

Brdier, (Henri-Léonard), *Les archives de la France ; histoire des archives, des ministères, des départements, des communes, des hôpitaux, des greffs, des notaires etc., contenant l'inventaire d'une partie de ces dépôts*, Paris, Dumoulin, 1885.

de Laborde, (Léon), *Les archives de la France, leurs vicissitudes pendant la Révolution, leur régénération sous l'Empire*, Paris, Vve Renouard, 1867,

Denis Diderot, *Encyclopédie, ou Dictionnaire raisonné des sciences, des arts et des métiers, par une Société de gens de lettres...*, Paris, 1755-1765.

### <연구서>

Anheim (E.) et Olivier Poncet. “Fabrique des archives, Fabrique de l'histoire”,  
Revue de synthèse ; 5e série, année 2004, pp.1-14.

Association des archivistes français, *Manuel d'archivistique : théorie et pratique des archives publiques en France*, Seupen, 1970.

Bautier, (R.-H.), “La phase cruciale de l'histoire des archives. La constitution des dépôts d'archives et la naissance de l'archivistique, XVIe-début du XIXe siècle,” *Archivum*, 18, 1968, pp.139-150.

Duchain, (M.), “Requiem pour les trois défuntés”, *La Gazette des archives*, no 104 (1979).

Duchain, (M.), *Les obstacles à l'accès, à l'utilisation et au transfert de l'information contenue dans les archives : une étude RAMP*, Unesco, Paris, 1983.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Éd. Kent et Lancour, New York,

1968, vol. 1, p.516.

Favier, (L.), *La mémoire de l'Etat ; Histoire des Archives nationales*, Paris, Fayard,, 2004.

Galland, (B.), “L’archivistique française a l’épreuve du temps”, *Archives*, V.34, N. 1 ET 2, 2002-2003, pp. 119-137.

HILDESHEIMER, (F.), “Les Archives de France, mémoire de l’Histoire”. Numero hors-serie de la revue Histoire et archives. Paris, Champion, 1997.

Monnier, (F.), “De l’intérêt historique. A propos d’un avant-projet de loi sur les archives”, *Revue administrative*, 309, 1999, pp.227-229.

Posner, (E.), “Some aspects of Archival Development since the French revolution”, *The American Archivist*, v.3, july, 1940, pp. 159-172.

Ribeiro, (F.), “Archival science and changes in the Paradigm”, *Archival science*, V.1, 2001, pp.295-310.

Santoni, (P.), “Archives et violence : à propos de la loi du 7 messidor an II”, *La Gazette des archives*, nos 146-147 (1990).

### <국내 논문>

주경철, “프랑스의 고문서보관소 제도”, *역사비평*, 1997년 봄호, 1997. 2, pp. 100~107.



## Abstracts

### **The Law of the 7 Messidor II on Nationales Archives of France** - the research against the evolution process at the national Archives of France from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center -

Jo, Chung-Hyun

The first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Archives of France' was defined by a law voted during the Revolution, the law of June 25, 1794 which is remained into force during nearly two century-until with the law of January 3, 1979. This law is regarded as the text founder of the national Archives of France, mainly thanks to its article 48 which posed the principle of the free communicability of the whole of the documents of national Archives of France. But it had initially as an aim to organize and frame sortings of the documents gathered in great number since the beginning of the French revolution. Its principal provision does not leave astonish us: it envisaged a separation between the documents to be eliminated, the useful documents has the administration, only intended to be preserved in national Archives of France?, and the documents interesting for the history, which were intended for the national Library.

**Key words** : law of June 1794, national Archives of France, free communicability, frame sorting.

〈RESUME〉

**la loi du 7 messidor II sur des archives nationales de France**

-la recherche contre le processus dévolution aux archives nationales de la  
France de Archives de assemblée nationale de France-

Jo, Chung-Hyun

La première organisation des Archives de France a été définie par une loi votée pendant la Révolution, la loi du 25 juin 1794 (dite loi du 7 messidor an II, compte tenu du calendrier révolutionnaire alors en vigueur) qui est demeurée en vigueur pendant près de deux siècles-jusqu'à la loi du 3 janvier 1979. Cette loi est considérée comme le texte fondateur des Archives de France, en grande partie grâce à son article 48 qui posait le principe de la libre communicabilité de l'ensemble des documents d'archives. Mais elle avait d'abord pour objet d'organiser et d'encadrer les triages des documents rassemblés en grand nombre depuis le début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Sa disposition principale ne laisse pas de nous étonner : elle prévoyait une séparation entre les documents à éliminer, les documents utiles à l'administration, seuls destinés à être conservés dans les « Archives », et les documents intéressants pour l'histoire, qui étaient destinés à la Bibliothèque nationale.

Il y a dans ce texte, pour l'archiviste ou l'historien d'aujourd'hui, un double sujet d'étonnement. En premier lieu, cette affirmation qu'il existe parmi les

archives des documents « historiques » et d'autres qui ne le sont pas. En second lieu, cette décision que les documents historiques relèvent des Bibliothèques, et non des Archives.

Dans le cadre de cette recherche consacré précisément aux liens entre les archives et l'histoire dans l'Europe du XIXe siècle, il m'a paru qu'il était indispensable d'examiner cette disposition paradoxale d'une des premières lois européennes sur les archives, en essayant de mieux comprendre de quelle conception elle était l'héritière, de quelle manière on a commencé de l'appliquer et pourquoi, finalement, le transfert à la Bibliothèque nationale ne s'est pas fait, et enfin de repérer les grandes étapes de la reconnaissance de tous les documents d'archives à l'écriture de l'histoire.

**Key words** : loi du 7 messidor An II, Archives de France, la libre communicabilité, les tirages des documents